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11. 24 선고 2016나10358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11. 24 선고 2016나1035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430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2.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소관 : 익산지점)

3.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

4. 김제수산업협동조합(소관 : 태평동지점)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 선고 2016. 11. 24.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43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고창군수협'이라 한다)은 99,600,000원, 피고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서천서부수협'이라 한다)은 68,900,000원, 피고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근해유망수협'이라 한다)은 84,460,000원, 피고 김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김제수협'이라 한다)은 2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고창군수협은 99,600,000원, 피고 서천서부수협은 68,900,000원, 피고 근해유망수협은 84,460,000원, 피고 김제수협은 2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2014. 10. 24.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C, 아라원 주식회사, D, E, F, G, H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합계 3,384,3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양도대금, 대금지급의 방법)

- ① 양도대금은 총 3,384,300,000원으로 한다(경매집행비용 포함).
- ② 원고, B은 피고들에게 양도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피고 고창군수협 (전주서부지점)	2014. 8. 19.	71,600,000원
피고 서천서부수협 (익산지점)	2014. 8. 19.	68,900,000원	
피고 근해유망수협 (본점)	2014. 8. 21.	34,460,000원	
피고 고창군수협 (전주서부지점)	2014. 10. 24.	28,000,000원	
피고 근해유망수협 (포일동지점)	2014. 10. 24.	50,000,000원	
피고 김제수협 (태평동지점)	2014. 10. 24.	22,000,000원	
계약금 합계		274,960,000원	
잔금	피고 고창군수협 (전주서부지점)	2014. 11. 28.	644,400,000원
피고 서천서부수협 (익산지점)	620,100,000원		
피고 근해유망수협 (본점)	310,140,000원		
피고 고창군수협 (전주서부지점)	436,700,000원		
피고 근해유망수협 (포일동지점)	760,000,000원		
피고 김제수협 (태평동지점)	338,000,000원		
잔금 합계		3,109,340,000원	
총계	3,384,300,000원		

③ 원고, B은 양도대금을 피고들이 지정하는 대표 은행계좌(수협 426-61-00326 예금주: 고창군수협 전주서부지점)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피고들이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의 예정)

① 본 계약조항과 상치되는 여하한 것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BOI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양도대금 지급기일에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5영업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 및 B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본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본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 B에게서 지급받은 모든 금액(계약금 포함)을 약정 배상금으로 몰취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원고, B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추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③ 피고들이 본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본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피고들은 본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원고, B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B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피고 고창군수협에게 99,600,000원,

피고 서천서부수협에게 68,900,000원, 피고 근해유망수협에게 84,460,000원, 피고 김제수협에게 2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와 B으로부터 위 각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인 2015. 5. 27.경 주식회사 신흥타워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합계 3,291,49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들은 2015. 1.경 원고에게 2015. 1.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피고들의 위 통지서 송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원고는 2015. 5. 11.경 피고 고창군수협, 서천서부수협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합계 1,129,626,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근해유망수협, 김제수협과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고창군수협, 서천서부수협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있는 상태에서 피고들이 2015. 5. 27.경 주식회사 신흥타워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원고와 B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미 해제되었거나 원고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써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와 B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B이 2015. 8. 20.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채권 중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원고의 잔금 지급 지체에 따른 피고들의 계약 해제 통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서 손해배상으로 예정된 계약금 전액의 물취는 신의칙상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인 2014. 11. 28.로부터 5영업일이 지난 2014. 12. 4.까지 잔금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들이 원고와 B에게 2015. 1. 15.까지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물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와 B이 위 통지를 최종적으로 받은 2015. 1. 16.까지도 잔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이 그 이후인 2015. 5. 27. 주식회사 신흥타워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약정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원고와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피고들의 계약금 물취는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와 B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지급기일에 양도대금의 지급을 5영업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 및 B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B은 그 잔금 지급기일인 2014. 11. 28.로부터 5영업일이 지난 2015. 1. 4.에 이르기까지 양도대금 중 잔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② 피고 서천서부수협은 2015. 1. 8., 나머지 피고들은 2015. 1. 9. 원고와 B에게 2015. 1. 15.까지 잔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와 B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물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각 발송하여 위 통지가 2015. 1. 13.부터 2015. 1. 16. 사이에 원고와 B에게 각 도달하였다.

③ 그럼에도 원고와 B은 위 통지를 송달받은 이후에도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2015. 1. 16.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④ 원고는 위 통지서에 기재된 2015. 1. 15. 이후 피고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와 B에게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원고와 B이 위 통지서에 기재된 때까지 잔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또한 원고는 2015. 5. 11.경 피고 고창군수협, 서천서부수협과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대표이사이던 주식회사 I와 피고 고창군수협, 서천서부수협 사이에 2015. 5. 11.경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 새로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당초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의 효력이 위 2015. 5. 1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원고 측은 위 2015. 5. 1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당시 법원의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중단된 상태였으나 원고가 점유권 확보비용 60,000,000원과 경계벽 설치비용 30,000,000원 등의 비용을 들여 위 임의경매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상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③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해진 액수가 계약금 합계 274,960,000원으로 전체 양도대금 합계 3,384,300,000원의 약 8.1%에 불과한 금액이며, ④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전적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물취한 계약금의 액수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김용민

판사유상호

별지